

# 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

해외 우수 R&D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, 단체,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1월 15일  
지식경제부 장관

## I. 공통사항

### 1. 사업 개요

- 『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』은 국내기관과 국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(연간 10억원 내외)을 과제별로 최대 5년까지 지원
- 사업별 세부유형 및 지원규모

(단위: 억원)

사업 구분	세부 유형	지원규모*	비고
양자 국제공동 R&D	① 전략기술개발	50	지정공모
	② 수요기술개발	236	
	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	60	
다자 국제공동 R&D	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**	60	자유공모
합 계		406	

\*: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, \*\*: 자세한 사항은 [www.eurornd.or.kr](http://www.eurornd.or.kr) 참고

- ① **【전략기술개발】** 혁신성, 파급효과,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,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(대학, 기업 포함)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
  - 2010년 1/4분기 중 산학연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약 20개 지원 대상 과제(제안요구서 포함)를 별도로 공고 예정
- ② **【수요기술개발】** 해외 우수 R&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
  - 중소형과제(연 3억원 내외, 3년 이내 지원)와 대형과제(연 10억원 내외, 5년 이내 지원)
- ③ **【글로벌 상용기술개발】** 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)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, 또는 2)정해진 해외 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·R&D·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
  - 1) : 해외시장개척형으로 신청시 해외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인서 첨부 필요
  - 2) : 글로벌 산학협력형으로 '10년 상반기 중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선정하여 공고
- ④ **【EU공동기술개발 참여】** 유럽 지역의 다자간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또는 EU Framework Program 내에서 회원국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
  - **【EUREKA】** 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
  - **【EU FP】** 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

## 2. 지원 내용

### 가. 지원 유형·규모 및 기간

사업구분	지원유형	지원금액	지원기간
양자간 국제공동	① 전략기술개발	연 10억원 내외	5년 이내
	② 수요기술개발*	중소형 3억원 내외, 대형 10억원 내외	중소형 3년 이내, 대형 5년 이내
	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*		
다자간 국제공동	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*	연 2~5억원	3~5년

- \*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(2천만원 이내, 2~6개월)을 지원할 수 있음
- 수요기술개발 대형 과제(의무 수행), 글로벌 상용기술개발중 사전활동 과제
  -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중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

## 나.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

- 참여기업 현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최대 75%까지 지원가능

정부출연금 지원비율		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	
참여기업 1개	대기업	총사업비 50% 이내	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/3 이상 경우	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	중소기업 <sup>1)</sup>	총사업비 75% 이내		
참여기업 2개 이상	중소기업이 2/3이상	총사업비 75% 이내	그 밖의 경우	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	중소기업이 2/3미만	총사업비 50% 이내		

- 1): 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  
\*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

## 다. 기술료 징수

-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

- 정액기술료 징수비율

주관기관 유형	정액기술료율
대 기업	총 지원 출연금의 40%
중견기업 <sup>1)</sup>	총 지원 출연금의 30%
중소기업	총 지원 출연금의 20%

※ 사업별 세부유형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 참조

- 1) 중견기업 :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)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- 경상기술료 징수 요율 및 방법은 「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」을 참조

## 3. 신청 자격

-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, 국외기관과 국내기업 참여 필수
- 국외기관과 공동연구수행 관련 MOU 제출, 협약 시 계약서 제출
  - 수요기술개발사업에 국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

### <세부유형별 주관, 참여기관 자격>

사업구분	세부유형	신청자격	
		주관기관	참여기관
양자 국제공동 R&D	① 글로벌 전략기술개발	국내 산·학·연	국내·외 산·학·연
	② 글로벌 수요기술개발	국내·외 산·학·연	
	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	국내 기업	
다자 국제공동 R&D	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	국내 산·학·연	

## 4. 추진 일정

세부유형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① 전략기술개발		지원대상 분야 도출		과제 공고	신청접수			평가	협약				
② 수요 기술 개발	대 형	과제공 고	연구계획서 산정접수평가	연구기획보고서 작성·제출									
	중소형		수시접수, 수시평가·협약(연 4회 내외)										
③ 상용 기술 개발	글로벌 산학협력	해외거점대학 선정 및 지원대상분야 도출					과제 공고	신청접수	평가	협약			
	해외시장 개척형	과제 공고	수시접수, 수시평가·협약(연 4회 내외) *국내기업, 해외수요기업 간 파트너링 활동 진행(연 2회)										
④ EU공동기술개발 참여		과제 공고	수시접수, 수시평가·협약(연 4회 내외)										

※ 사업별 진행사항에 따라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

## 5. 신청 요령

### 가. 신청방법

-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온라인(일부사업 제외),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
### 나.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-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) 등을 통해 교부

### 다. 신청서 제출

- 우편 또는 인편 제출시
 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국제협력기획팀
    - 주소: (135-51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
- 온라인 제출시
  - 사업별 세부공고시 별도 안내

## 6. 평가 절차

### 가. 평가절차 및 지표

#### □ 평가절차

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

#### □ 평가지표

- 기술성 및 개발능력(40), 실용화·사업화 가능성(20),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(20), 지적권 분배계획(20)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

#### □ 우대가점

- 신규 사업 선정 평가 시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 후 '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'의 우대기준(8조

라항)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여 부여하며, 이 경우 합산한 가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
### 【우대 기준】

1) 장관은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. 이때, 협력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가)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 평가시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**점**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나) 최근 5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우수”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는 신규 평가 시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다)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% 이상인 경우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라)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신뢰성(R)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신규 평가시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**점**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(중복 산정 불가)
- 마)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, 그가 소속된 기업),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시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3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바)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사) 외국측 정부 R&D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3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
- 아)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이 당해연도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인 경우는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.(30% 이상인 경우에는 **점**, 40% 이상인 경우에는 4점, 50%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가점한다.)

2)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 후 위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여 부여한다. 이 경우 합산한 가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

## 나. 선정대상 제외

평가·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

- ①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
- ⑤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‘공동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’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등

## 7. 관련 법령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9조,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40호),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41호),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38호),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

## 8. 사업설명회

- 사업별 세부 공고시 별도 안내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)를 통해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안내 예정

## 9. 안내 처

### 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

세부유형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	
① 전략기술개발	전유덕 선임	02-6009-3184	jyd@kiat.or.kr	
② 수요기술개발	대 형	백성진 선임	02-6009-3182	
	중소형			bryan100@kiat.or.kr
③ 글로벌 상용기술 개발	글로벌 산학협력	심지혜 연구원	02-6009-3188	jhshim@kiat.or.kr
	해외시장개척형	윤소미 연구원	02-6009-3186	ssomie81@kiat.or.kr
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	심기태 선임	02-6009-3185	gtshim@kiat.or.kr	



## II. 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사업명	사업개요	지원규모	지원내용	추진일정
전략기술개발	기술혁신성, 파급효과,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과제를 대상으로 국내기관 주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외연구기관과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	50억원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자금 지원</li> <li>○ 지원대상: 국내 주도의 국내·외 산학연 컨소시엄</li> <li>○ 지원조건: 5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0.3월: 개별사업 공고 - 지원대상분야(RFP) 게시예정</li> <li>○ '10.4~6월: 신청 접수</li> <li>○ '10.7~8월: 신규 평가</li> <li>○ '10.9월: 협약 체결</li> </ul>
수요기술개발	해외 우수 R&D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	236억원 (신규) 83억원 (계속) 153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</li> <li>○ 지원대상: 국내·외 연구기관 컨소시엄</li> <li>○ 지원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과제는 5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</li> <li>- 소형과제는 3년 이내 연간 3억원 내외</li> </ul> </li> <li>* 대형과제는 사전기획과제 수행 필요</li> </ul>	<p><b>【대형과제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0.2월: 사전기획 제안서 접수</li> <li>○ '10.3월: 사전기획 제안서 평가, 선정, 협약</li> <li>○ '10.4~6월: 사전기획 보고서 작성·제출</li> <li>○ '10.7월: 신규평가 및 협약</li> </ul> <p><b>【소형과제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0.2~12월: 수시 신청접수·평가 및 협약</li> </ul>
글로벌 상용기술개발 ① (해외시장 개척형)	국외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창출과 직결되는 기술개발 사업	35억원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 대기업을 수요 제품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</li> <li>○ 지원대상: 국내 기업과 국외 대기업간 컨소시엄</li> <li>○ 지원조건: 3년간 연간 10억원 내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0.2월: 개별사업 공고</li> <li>○ '10.3~6월: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간 상담회 개최</li> <li>○ '10.2~12월: 수시신청접수·평가 및 협약</li> </ul>

사업명	사업개요	지원 규모	지원내용	추진일정
글로벌 상용기술 개발 ② (글로벌 산학 협력형)	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지정하고 기술기획,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, 현지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	25억원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대학 간 공동 기술 사업화 소요 비용</li> <li>○지원 대상: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 공과대학간 컨소시엄</li> <li>○지원 조건: 2년간 연간 3억원 내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'10.5월: 해외 공과대학 선정 및 현지 사업화 과제기획</li> <li>○'10.6월: 개별사업 공고</li> <li>○'10.7~8월: 신규평가</li> <li>○'10.9월: 협약체결</li> </ul>
EU 공동 기술 개발 참여 ① (EUREKA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)	유레카 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기술 기업 양성	50억원 (신규 40억원 계속 1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국내 주도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수행중인 유레카 과제에 참여 가능</li> <li>○지원대상: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(유럽 연구기관은 해당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음)</li> <li>○지원조건: 5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또는 3년 내외 연간 3억원 내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'10.2월: 개별사업 공고</li> <li>○'10.2~12월: 수시접수, 신규평가 4회, EU 총회 4회</li> <li>○'10.2~12월: 승인 과제별 협약</li> </ul>
EU 공동 기술 개발 참여 ② (EU FP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)	EU FP 과제에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첨단기술 개발과 선진 R&D 네트워크 구축 및 EU 시장 진출 촉진하는 사업	10억원 (신규 6억원, 계속 1억원, 참여활동 지원 3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EU FP에 참여가 확정된 과제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FP참여 전 단계의 협력활동은 참여지원활동을 지원)</li> <li>○지원대상: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(유럽 연구기관은 EU 국가별 출연금으로부터 지원 받음)</li> <li>○지원조건: 3년 내외 연간 2억원 내외 참여 활동지원 2천만원, 6개월 내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'10.2월: 개별사업 공고</li> <li>○'10.3월: 참여활동과제 신청접수</li> <li>○'10.2~12월: 수시접수, 개별평가</li> </ul>